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

가. 제안이유

-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는 외국인주민 종합계획 수립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외국인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제명)
-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안 제2조)
-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 지원, 적절한 시책 추진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안 제4조의2)
-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변경 운영(안 제7조~제12조)
- “거주외국인 복지관”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안 제13조~제14조)

-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를 폐지하고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안 제1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10.12.31 통보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함.
  - 거주외국인(’06)→외국인주민(’07)→이주민(’08)→외국인주민(’08.5~)
- 안 제2조에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외국인주민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에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정 함.
- 안 제4조에 구의 책무로 외국인주민이 지역 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 함.
- 안 제4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외국인주민 지원 목표와 비전, 실태조사,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외국인주민 지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 함.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종전 “거주외국인 지원 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변경하여 구의원, 경찰서, 출입국 관리사무소, 교육청, 종교·민간단체 관계자,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주민 등 13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함.
-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에 종전 “거주외국인 복지관”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변경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안 제15조에 종전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를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로 변경하고 자문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함.

-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말 기준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2,168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0.4%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1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의·조정기능이 부족하여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행정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단위 민·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및 지역 공동사안 등의 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됨.
- 수요자인 외국인주민의 참여 없는 정책 생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어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게 됨.
- 전반적인 검토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행안부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문장으로 정리하여 구민이 조례의 용어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 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제 60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관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표준안의 취지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우리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의 관련 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외국인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 (안 제2조)

다. 외국인주민에게 지역주민과 동등한 지위 부여 (안 제3조)

- 구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라. 구의 책무 신설 (안 제4조)

-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 지원 및 적절한 시책 추진,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

마.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 (안 제4조의2)

-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개정

바.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변경 운영 (안 제7조 ~ 제13조)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 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에 민간단체 관계자 및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지원계획, 지역 공동사안 등 자문

사.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 (안 제15조)

-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외국인 정책을 반영토록 외국인 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

아.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4조)

자.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삭제)

차. 기타 지원범위 및 조문 정리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 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1.5.26~6.15) 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행정적”으로, “생활할”을 “정착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제2조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을 ““외국인주민 가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공공시설 이용)”을 “(외국인주민의 지위)”로 하고, 같은 조 제

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산과”로, “각종”을 “각종 행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을 “(구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를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로, “자격이 없는”을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원사업)”을 “(지원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 사업
7. 보건의료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편성”을 “편성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을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등포구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그”를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및 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1명 이내의 위원”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사람”으로,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구의원과 교수·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담당국장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을 “구청장 또는 위원장”으로,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회의를 시작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을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을 “(위원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위원회”를 “협의회”로, “외부위원”을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을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외국인”을 각각 “외국인주민”으로, “거주외국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복지관”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은 거주 외국인”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복지관의 시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관의 시설,”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목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을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필요한”을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 운영”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으로, “지도·점검할”을 “지도·점검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18조 제목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을 “(세계인의 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세계인”을 “다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학술행사”를 “연구발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에 의한 행사를”을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로, “대행하게”를 “행사를 추진하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를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로 한다.

제19조 “거주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중”을 “외국인주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과 모범구민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중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u>외국인</u>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u>필요한</u>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u>생활할</u>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영등포구 ----- <u>외국인주민</u> -----<br/>----- <u>필요한 행정적</u> -----<br/>----- <u>정착할</u> -----<br/>-----.</p>                                                                                                                                                                              |
|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u>&lt;신 설&gt;</u></p> <p>1.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p> <p>2.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p> <p>3. “외국인 지원단체”라 함은 거주외국</p> | <p>제2조(용어의 정의) -----<br/>----- 뜻은 -----.</p> <p>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p> <p>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p> <p>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br/>-----<br/>-----<br/>-----.</p> <p>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p> |

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이용)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 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외국인 거주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신 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산과 ----- 각종 행정 -----.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합법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 외국인 가정
4.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 2. (생략)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

-----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② -----  
-----  
-----.

1. ·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사업)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소양 또는 전문교육, 보육
2. 고충처리·인권옹호 및 생활법률, 민원처리 안내상담
3.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취업상담
4.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보건의료
6. 역사 문화제도 교류·체육행사 개최
7. 기타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2장 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 -----  
-----.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7. 보건의료
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 편성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 제2장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제7조(설치 및 기능)-----  
-----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  
에 관한 사항
2. 3. (생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교육청·경찰서·지방노동청·출입  
국관리사무소·한국산업인력공단에  
서 외국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2. 구청 공무원중 국장급이상 2명 이  
내
3. 거주외국인·구의원·외국인 지원  
단체 관계자 중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생략)

제9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  
-----
2. 3. (현행과 같음)
4. 다문화가족지원 연계사항 및 그 -----  
-----

제8조(구성 등) ① 협의회 -----  
-----13명 이내 -----  
----- 각 호의 사람 ---  
-----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영등포구 외  
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지원  
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  
리사무소 등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체의 관계자 및 구의원과 교수·상  
공인 등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1년 이상 거  
주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  
는 사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 ① 협의회 -----  
----- 담당국장이  
된다.

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거주외국인 지원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생 략)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구청장 또는 위원장 ----- 경우에 -----.

② 협의회 -----  
----- 개의하고 -----.

제11조(간사) ① 협의회 -----  
-----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  
-----.

② -----  
-----.

1. 협의회 -----
2. (현행과 같음)
3. 협의회 -----
4. ----- 협의회 -----

제11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또는 변경되었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협의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거주외국인 복지관 설치 운영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거주외국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 보건의료지원, 상담,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4조(운영) ① 복지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시설, 이용방법, 시간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장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  
-----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

### 제3장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 외국인  
인주민 -----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  
-----.

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은 외국인주민-----  
-----  
-----  
-----.

제14조(운영) ①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  
-----  
-----.

②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  
-----  
-----.

### 제4장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및 지원

제15조(민관협의회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거주외국인 지원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지원)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주민자문회의의 설치)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영등포구 외국인주민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구성과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 외국인주민 -----  
-----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  
-----.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

-----  
-----  
-----  
----- 외국인주민 -----  
----- 업무 -----  
-----.

② -----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 -----  
-----  
----- 범위 -----  
-----.

③ -----  
-----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 -----  
-----  
----- 지도·점검 -----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 ① 구청장은 세계인 주간(매년 5월 20일부터 1주일)을 맞이하여 주민과 거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2. 학술행사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주민증서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

검하게 할 -----.

④ -- 밖에 -----  
-----  
-----  
-.

제18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다문화-----  
-----.

1. (현행과 같음)
2. 연구발표 -----
3. -----  
외국인주민 -----
4. ----- 외국인주민 -----  
-----

③ -----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 행사를 추진하게 -----.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  
-----.

제19조(포상) ----- 외국인주민 -----

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  
다.

제20조(표창수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생략)
2. 외국인중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과 모범  
구민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명예구민) 구청장은 거주외국  
인 지원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  
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  
우할 수 있다.

<신설>

제20조(표창수여)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주민 중 -----  
-----

② 외국인주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  
민 표창 조례」-----.

제21조(명예구민) ① ----- 구정발전  
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 -----  
-----.

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  
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